##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705

발의연월일: 2024. 8. 9.

발 의 자: 안규백·조인철·안태준

조 국 · 장종태 · 염태영

송옥주 • 차지호 • 천준호

서미화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생활고에 시달려 마트에서 8만3천원어치 반찬을 훔친 6·25 참전용사의 사례가 언론을 통하여 보도되며 참전유공자의 생활 실태나 국가 예우의 적절성에 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예우는 대한민국의 국격, 나아가 존재가치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참전유공자의 생활 수준을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오늘날 세계적인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으로서 기본적인 책무라고 할 것임.

한편 등록된 참전유공자의 수는 2022년 5월 31일 24만3314명에서 2 023년 5월 31일 22만6491명(6·25 4만7204명, 월남전 17만7978명, 6·2 5 및 월남전 1,309명 등)으로 불과 1년 만에 약 6.9%, 1만6823명이 감소하는 등 고령 등으로 인하여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참전유공자에 대한 국가의 예우를 다 하기 위하여서는 시급하게 대책을 마련할 필

요가 있음.

이에 개별 수당 지원 외 참전유공자의 일상적인 의·식·주 등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하고,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할 의무를 부여하며, 관련 사업을 위한 기초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참전유공자의 생활환경 등을 조사하도록 함(안 제4조제5호 및 제12조의4 신설).

법률 제 호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참전유공자의 일상적인 의·식·주 등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

제1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2조의4(생활환경 등의 조사)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한다.
  - 1. 참전유공자의 생활환경
  - 2. 이 법에 따른 사업 등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에 대한 참전유공자의 만족도
  - 3. 제4조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수립 및 이행 현황
  - 4.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의 생활환경 등에 관한 조사를 매년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5년 마다 1회는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 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관계 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 다.
- ④ 제1항에 따른 조사의 기준일, 방법 등 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	제4조(국가 등의 책무)
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의 예	
우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5. 참전유공자의 일상적인 의ㆍ
	<u>식·주 등 기초생활을 보장하</u>
	<u>기 위한 사업</u>
<u>&lt;신 설&gt;</u>	제12조의4(생활환경 등의 조사)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립
	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
	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참전유공자의 생활환경
	2. 이 법에 따른 사업 등 참전
	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
	에 대한 참전유공자의 만족도
	<u>3. 제4조에 따른 국가 및 지방</u>
	자치단체의 사업 수립 및 이
	<u>행 현황</u>
	4.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의 생활환경 등에 관한 조사를 매년 전수조 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5년마다 1회는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관계 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조사의 기준일, 방법 등 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